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

1. 심사경위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5. 11 화순군수

나. 회부일자 : 2005. 11. 29

다. 상정일자 : 2005. 12. 9

(제135회 화순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2. 제안 설명요지

가. 제안설명 : 환경과장 안태호

나. 제안사유

-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 및 야생동물 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를 보상하여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하는데 기여코자 함.

다. 주요내용

- 단체의 구성 :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15인 이상으로 한다(제3조)
- 단체의 업무 : 야생동물 밀렵행위 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제5조)
- 단체활동지원 :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제6조)
- 보상·지원대상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및 피해예방 시설물 또는 인명, 신체상 피해 등의 경우(제8조)
- 피해농지면적기준 : 실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실경작 면적기준(제9조)
- 보상·지원제외대상
 - 피해면적 100평 미만인 경우(제10조 1호)
 - 피해보상금액 30만원 미만인 경우(제10조 2호)
- 위원회구성 :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제12조)
- 피해신고 및 조사 : 피해농가는 마을이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제14조)
- 피해보상·지원금 지급 :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한다.(제15조)

화순군 야생동물보호 및 피해보상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보호단체 지원·육성을 통한 무분별한 야생동물 포획을 예방하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또는 인명 등 피해를 사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이를 보상·지원 하므로서 야생동물보호로 인한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고 인간과 폐적한 자연 환경 및 야생동물이 함께 상생 공존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농작물 피해보상” 이라 함은 멸종위기 야생동물·보호야생동물 또는 산과 인접한 전·답에서 유해야생동물(멧돼지, 멧토끼, 고라니 등)이 농작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② “야생동물 피해 예방시설”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제 2 장 야생동물보호단체 지원

제3조(단체의 구성요건) 야생동물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밀렵행위감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내에 거주하는 주민 15인이상으로 구성하여 군에 등록한 단체로 한한다.

제4조(단체의 활동)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단체에서 하는 활동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야생동물의 서식분포 및 이동경로조사
2. 야생동물의 이동통로 설치 및 표지판 또는 보호시설의 설치
3. 불법수렵 및 밀렵행위 근절을 위한 주민홍보 계도
4. 수렵장 관리 및 불법엽구 수거 행사
5. 불법포획 거래, 가공, 박제 등 감시
6. 밀렵감시단 운영 활동 및 야생동물보호 캠페인

제5조(단체의 임무) 단체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명예 야생 동·식물보호원으로 위촉되고 야생 동·식물보호 및 야생동물밀렵 행위 감시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2. 단체는 매회개년도 개시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단체는 제4조에 의거 활동내용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단체의 활동지원) ① 군수는 단체의 육성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의하여 군비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지원을 받는 단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단체가 제3조 및 제5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2. 단체의 활동실적이 현저히 부족할 때

제 3 장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제8조(보상·지원요건)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 지급은 군내에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가 발생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1. 군민에 의해 군내에서 재배된 피해면적이 550m² 이상의 농작물에 대한 피해(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피해면적에 상관없이 보상 가능함)
2. 군민에 의해 군내에서 재배된 피해보상금 산정액 기준 30만원 이상의 피해(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피해보상금 산정액에 상관없이 보상 가능함)
3. 군민에 의해 군내에서 설치하는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예방 시설물 설치재료비(단, 인건비는 제외한다)
4. 야생동물에 의해 군내에서 발생한 군민에 대한 인명, 신체상 피해로서 본인 부담금 10만원 이상의 경우

제9조(피해농지 면적기준)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은 실 소유 면적에 관계없이 경작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제10조(보상·지원제외대상) 피해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1.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550m² 미만인 소규모 피해
2. 농작물의 총 피해보상금 산정액이 30만원 미만인 소규모 피해
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4. 농작물 등을 선의의 관리를 하지 않은 경우
5. 인명, 신체상 피해의 경우 치료비 본인 부담금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순군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해액 산정 심의 및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2. 기타 피해보상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환경과장, 농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산림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화순군의회 의원2인과 기타 농업경영에 풍부한 경험과 의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환경관리담당이 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피해신고 및 조사) ①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주민은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이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혔을 때 피해자의 신청을 받아 그 피해정도를 자체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자 및 마을이장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15조(피해보상·지원금 지급) ①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야생동물 또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자는 그 피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피해보상금 신청서에 피해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야생동물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지원신청하여야 하며, 상습피해 여부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 신청 또는 시설설치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14조에 의거 현지 조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피해보상·지원금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피해보상·지원금 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피해보상금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한다.

⑤ 피해예방시설 지원금은 피해예방시설 설치완료 후 준공확인을 거쳐 현금 또는 통장으로 지급한다.

⑥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6조(피해보상·지원액 산정) ① 피해보상·지원은 최대 5백만원까지 보상·지원하되 농작물 피해의 경우는 “별표 1” 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기준에 의거 보상한다.

②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50%까지 지급하되 인명, 신체상 피해에 대해서는 치료비중 본인 부담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농작물의 경우는 작목별 생육단계와 후작 여부 등 피해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화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업무의 위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피해신고 접수 및 조사

2. 피해관련 보상금 산정결과 통지 및 보상금 지급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